

의안번호	제 727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10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7
----------	-----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학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 제18조의2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조항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중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를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제1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18조의2제2항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1일	3면	70,000	테니스장, 족구장
	4시간까지		35,000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09:00부터 18:00까지 이용 시에는 1일로 본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수수료) ① (생 략) ② <u>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u> ③ (생 략)</p>	<p>제1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u> 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8조의2(사용료) ① <u>총장은 대 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u> ② <u>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 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 여 야 한다.</u> ③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 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u> 2. <u>충청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u> 3. <u>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 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u>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